
	<b>보도자료</b>	
보도일시	2021. 8. 17.(화) 오전 10:00 이후(국무회의 시작 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5쪽 (붙임 2쪽 포함)
배포일시	2021. 8.13.(금)	담당부서 여성정책국 성별영향평가과
담당과장	박정애(02-2100-6171)	담당자 안일환 사무관(02-2100-6179)

## 성별영향평가로 남녀 모두 평등하도록 정책 개선 추진

- 「2020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 발표 -

-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에서 주요정책 29,906건 성별영향평가 실시, 총 3,811건 정책 개선
- 여성농업인의 모성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숙박업소 등에서의 불법촬영 등 성범죄 예방 지원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46개 중앙행정기관과 260개 지방자치단체(시도 교육청 포함)를 포함한 총 306개 기관에서 추진한 '2020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8월 17일(화) 오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 성별영향평가란? >  
 법령, 사업 등 정부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의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 개선에 반영하여 남녀 모두가 평등하게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양성평등기본법 제15조)  
 ※ (특정성별영향평가) 여성가족부가 정부 주요 정책과 법령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소관부처에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

- 지난 2020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각 기관은 법령과 사업 등 총 29,906건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해 8,528건의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 중 3,811건을 개선 완료하였다.

- 2019년과 비교하여 개선계획 수립 건수('19년 8,088건 → '20년 8,528건)와 개선 완료 건수('19년 3,373건 → '20년 3,811건) 모두 증가하였다.
- 특히, 중앙행정기관(46개)은 2,332건의 과제에 대해 평가를 실시해 262건의 개선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 중 186건이 개선 완료되어 2019년 개선 완료 123건 대비 51%가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정책 개선 이행률이 높아지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260개)는 27,574건의 과제에 대해 평가를 실시해 8,266건의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 중 3,625건을 개선하였으며, 특히 시·도 교육청의 평가 실시('19년 741건 → '20년 785건)가 활성화 되었다.

- 2020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개선한 주요 정책 사례는 다음과 같다.

- 고용노동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예술인 등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해 비자발적 실업 시 구직급여 및 출산(유·사산) 시 출산전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용안정 및 모성보호를 강화하였다.
-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이 연간 2일 범위(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3일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던 자녀돌봄휴가를 연간 10일 범위의 가족돌봄휴가로 확대하여, 가족 돌봄의 사각지대 해소 및 일·생활 균형 지원을 강화하였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소유자가 농지를 위탁경영하거나 임대차할 수 있는 사유에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를 포함하여 여성농업인의 모성권 보장을 강화하였다.
- 강원도 횡성군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전액 감면 대상을 '한부모가족 여성'으로 규정하던 것을 '한부모가족 세대원'으로 개선하여 한부모가족의 남성에게도 혜택을 부여하였다.

- 한편, 다수 부처와 관련되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며, 국민생활에 밀접히 연관된 주요 정책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분석·검토하는 특정 성별영향평가를 통해서도 정책 개선이 이루어졌다.

- 중소벤처기업부는 양성평등한 스타트업 창업 환경 조성을 위해 창업투자회사 전자공시 항목에 임직원 성별 현황을 반영하고, 창업지원 사업 참여자의 성별 통계를 관리하도록 하였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숙박업소 등 한국관광품질 인증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촬영을 예방할 수 있는 자가진단 컨설팅과 온라인 교육을 지원하는 등 성범죄 방지 조치를 강화하였다.

□ 여성가족부는 국무회의에 보고된 '2020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 보고서'를 8월 말 국회에 제출하고, 부처 누리집(www.mogef.go.kr) 공개와 사례집 발간 등으로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별영향평가는 법령이나 정부 정책에 성차별적 요소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 남녀 모두가 동등하게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중요한 제도이다."라며,

- "앞으로도 각 분야의 정부 정책이 성평등하게 수립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2020년 성별영향평가로 바꾼 우리의 일상  
2. 성별영향평가 개요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2020년 성별영향평가로 바꾼 우리의 일상

## 2020년 성별영향평가로 바꾼 우리의 일상

일상 생활 구현 확산

고용노동부

예술인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 구직급여와 출산전후 급여 지급근거 마련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가족돌봄 휴가 기간연장 및 대상 범위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 임대차 허용범위에 임신·출산 사유 포함하여 모성보호 지원 강화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

고용노동부

여성근로자의 건설 분야 참여 확대

중소벤처기업부

양성평등한 스타트업 창업 환경 조성

대전광역시 대덕구

과학기술분야 여성 청년 진인 추진과 경력유지를 위한 지원근거 마련

다양한 가족 지원 강화

충청남도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대상을 미혼모 중심에서 미혼모·부로 확대

강원도 횡성군

한부모가족의 남성 세대원에게도 평생교육 시설 사용료 전액감면 혜택 부여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한부모가족 대상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지원

안전 환경 조성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품질 인증 기준에 성인지적 관리방안 마련

서울특별시 중로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에 성희롱·성폭력 등 고충처리 절차 마련

- 3 -

- 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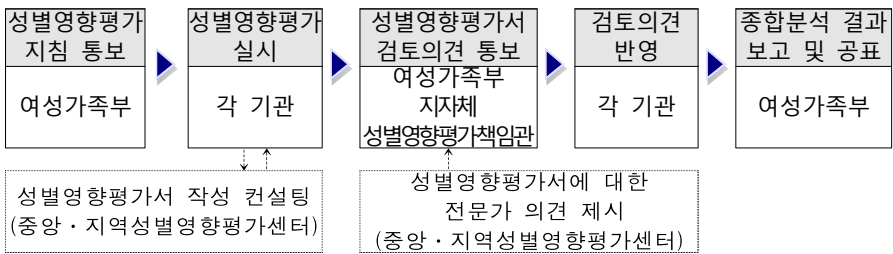
- **(개념)**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가 직접 분석·평가하여 개선하는 제도
- **(근거)** 「양성평등기본법」 제15조, 「성별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추진경과)**

- 여성발전기본법에 성별영향평가 근거 규정 마련('02년)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11.9.15.) 및 시행('12.3.16.)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개정('18.3.27.) 및 시행('18.9.28.)
- ※ '성별영향분석평가' → '성별영향평가'로 명칭 변경, 여성가족부와 각 기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정책에 대해 성별영향평가 대상 포함

- **(평가대상)** 제·개정 추진 법령, 법률에 의한 중장기 계획, 주요 정책·사업 등

- ▶ **제·개정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  
\* 법제처 법령안 심사 요청 시 성별영향평가서 결과 첨부(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12.10월~)
- ▶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 ▶ **주요 사업**(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

- **(추진기관)** 중앙행정기관(부처청·위원회), 지자체(사도, 사군구, 사도 교육청)
- **(절차)** 제·개정 법령, 법정 중장기 계획, 사업에 대해 중앙 및 지자체가 성별영향평가 실시 → 여가부(지자체는 성별영향평가책임관)는 검토의견 통보



※ 성별영향평가 전 과정은 성별영향평가시스템(<http://gia.mogef.go.kr>)을 통해 진행